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차 례

I. 개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예산안 개요	3
3. 세출예산안 명세	5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9
II. 검토의견	16
1.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	16
가.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검토	16
나.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검토	25
2. 인건비(1001-150)	29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29
나.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인력의 전문임기제 운영 관행 적절성 검토	30
다.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 예상 규모 감액조정 필요	34
3. 본부기본경비(1011-250)	4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41
나.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 국제교류 사업 예산으로 편성 및 적정 금액으로 조정 필요	41
4.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4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45
나. 헌법재판업무지원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전년 수준으로 조정 필요	46
다. 기록물 소독장비의 적절한 교체 필요 등	50

5.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54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54
나. 헌법재판연구활동;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의 필요성 및 예산 검토	55
6. 국제교류(1034-305)	6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60
나.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검토	61
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예산 검토	65
7.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7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70
나. 서증 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71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2021~2025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76
2. 2024년 주요 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79
3. 연도별 심판사건의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81

〈 헌법재판소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4년 9월 30일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특정직 · 일반직	별정직	일반직
합계	정원	352	11	66	12	2	261
	현원	337	10	65	7	1	254
본부	정원	314	11	66	2	2	233
	현원	305	10	65	1	1	228
소속	정원	38	0	0	10	0	28
	현원	32	0	0	6	0	26

* 주: 현원의 경우 별도 정원(6개월 이상 휴직, 파견 및 교육훈련자 등) 제외

* 자료: 헌법재판소

2. 예산안 개요

가. 예산규모

-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입예산안은 2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585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1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4년도 세입예산과의 증감 대비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 감	
		금액(B-A)	비 율(%)
641	244	△397	△61.9

자료: 헌법재판소

< 2024년도 세출예산과의 증감 대비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 감	
		금액(B-A)	비 율(%)
56,766	58,526	1,760	3.1

자료: 헌법재판소

나. 정부재정규모와의 비교

- 헌법재판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5억 2,600만원은 정부예산

일반회계 총규모 477조 6,296억원의 약 0.012%에 해당되어 2024년도와 비슷한 비율임.

< 정부재정규모와 헌법재판소 예산 규모의 대비(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예산	헌법재판소예산	비율(%)
2024년도 예산	449,526,707	56,766	0.013
2025년도 예산안	477,629,641	58,526	0.012
전년대비 증가율(%)	6.3	3.1	—

자료: 헌법재판소

다.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헌법재판소는 전년도 대비 12.5%(70억 7,200만원) 증액된 638억 3,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대비 8.3%(53억 1,200만원)가 감액된 585억 2,6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2025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항별	요구액(A)	조정액(B)	증감		증감사유
			금액(B-A)	비율(%)	
인 건 비	35,880	34,792	△1,088	△3.0	공통기준 적용
기본경비	7,655	7,383	△272	△3.6	사업량 조정
주요사업비	20,303	16,351	△3,952	△19.5	사업량 조정
합 계	63,838	58,526	△5,312	△8.3	

자료: 헌법재판소

3. 세출예산안 명세

가. 경비별 명세

□ 2025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 중 2024년도 대비 증감비율 및 전체 예산 대비 경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347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증액(12억 5,9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59.4%를 차지하고 있고,
- 기본경비는 7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가 감액(4,9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비는 163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가 증액(5억 5,0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27.9%를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세출예산안 경비별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구성비 (%)
			금 액 (B-A)	비 율 (%)	
인 건 비	33,533	34,792	1,259	3.8	59.4
기본경비	7,432	7,383	△49	△0.7	12.6
주요사업비	15,801	16,351	550	3.5	27.9
합 계	56,766	58,526	1,760	3.1	10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인건비 명세

- 인건비는 전년 대비 3.8% 증액된 347억 9,200만원이며, 직제상 정원 352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2명 및 2025년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인건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금 액 (B-A)	비 율 (%)
보수	31,760	32,893	1,133	3.6
기타직보수	1,539	1,661	122	7.9
연가보상비	234	238	4	1.7
총 액	33,533	34,792	1,259	3.8

자료: 헌법재판소

다. 기본경비 명세

-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0.7% 감액된 73억 8,300만원이며, 동 경비로 편성된 사업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전금, 유형자산 등임.

〈 2025년도 기본경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액(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금 액 (B-A)	비 율 (%)
본부기본경비	6,991	6,957	△34	△0.5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41	426	△15	△3.4
합 계	7,432	7,383	△49	△0.7

* 자료: 헌법재판소

라. 주요사업비 명세

□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3.5% 증액된 163억 5,100만원임.

- 주요사업의 예산항목 중 해외연수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7%(5,900만원) 증액된 5억 6,500만원, 국제교류 사업비는 전년 대비 4.6%(2,700만원) 증액된 6억 1,400만원, 헌법재판정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6.4%(10억 5,600만원) 증액된 74억 9,900만원이 편성됨.
- 한편,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3%(7,700만원) 감액된 6억 7,100만원, 본부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7.2%(3억 3,200만원) 감액된 42억 9,2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0.7%(1,300만원) 감액된 18억 6,500만원, 재판자료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17.9%(8,400만원) 감액된 3억 8,600만원, 전자도서관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1.9%(8,600백만원) 감액된 3억 700만원이 편성됨.

-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비(1억 2,700만원), 헌법재판소예비금(2,500만원)
은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주요사업비 세부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15,801	16,351	550	3.5
○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7	—	—
○ 재판활동운영지원	748	671	△77	△10.3
○ 본부운영지원	4,624	4,292	△332	△7.2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78	1,865	△13	△0.7
○ 해외연수	506	565	59	11.7
○ 국제 교류	587	614	27	4.6
○ 재판자료확충	470	386	△84	△17.9
○ 헌법재판정보화	6,443	7,499	1,056	16.4
○ 전자도서관운영	393	307	△86	△21.9
○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	—

자료: 헌법재판소

마. 신규사업 명세(세부사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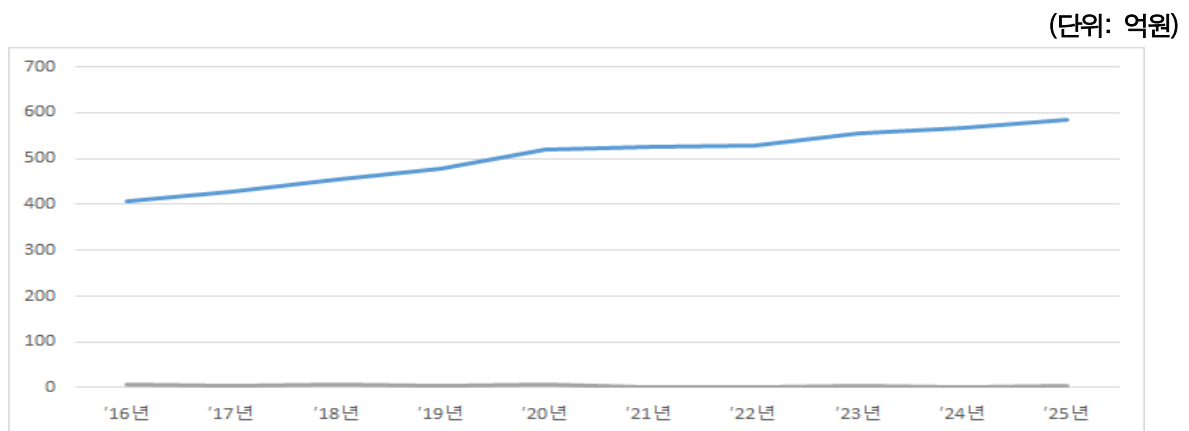
□ 해당 없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585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 증가 비율은 3.1%임. 참고로, 최근 헌법재판소 예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406억에서 2025년 585억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청사증축 관련 예산 반영으로 40억이 증가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예산 증가율이 낮게 나타남.

<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예산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액	406	427	454	479	519	526	529	555	568	585
증감액	29	21	27	25	40	7	3	26	13	18
증가율	7.7	5.2	6.3	5.5	8.4	1.3	0.6	4.9	2.3	3.1

자료: 헌법재판소

- 둘째,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는 기록물소독장비 교체(8,500만원), 5건의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공사(16억 4,800만원),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11억 5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7,900만원) 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음.
 - 셋째, 2024년 공관 환경개선공사(4억 3,000만원) 및 홍보동영상 제작(1억 3천만원) 완료 등으로 인해 본부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3억 3,200만원)되었으며,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9,300만원) 완료 등으로 인해 전자도서관운영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8,600만원)되었음.
-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헌법재판소는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및 ‘재판자료확충 사업(세부사업)’을 통해 총 8종의 간행물¹⁾을 발간하고 있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사업(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연구활동’ 사업을 통해 4종의 간행물²⁾을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자 기기를 통한 정보 소비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헌법재

1)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물은 외부 배부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2)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교재 등은 제외함

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의 해당 간행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간행물의 적정 배부수량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한 발간수량 축소가 필요해 보임.

특히,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주요인사 구술총서는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구술기록관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발간물 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에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문을 영문으로 발간·배부하는 영문 헌법재판 판례집은 내부 배부 수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간행물 재고수량으로 총 발행수량의 25%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 또한 지나치게 많다고 보임.므로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및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의 발간수량 축소와 전반적인 간행물 재고수량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모든 간행물을 연례적으로 거의 전직원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내부 배부 수량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내부 배부 수량을 축소하고, 이와 함께 외부 배부 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전직 인사 등에 대한 배부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외부 배부 수량을 조정하며, 재고 또한 적정 수량으로 조정하는 등

간행물 발간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헌법재판소 ‘인건비’ 예산(347억 9,200만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을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전문임기제로 운영하는 관행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의 어려움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을 위한 필수 인력은 직제 외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 범위 내에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본부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예산으로 편성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1,300만원)은 그 성격상 본부기본경비 예산이 아니라 국제교류 예산으로 편성하고 과거 편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참석자 수를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 재판활동운영지원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업무지원 예산 중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025년 예산(5,952만원)이 2024년 예산(3,960만원) 대비 50%(1,992만원) 가량 증액 편성되었는데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2024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

지하되 예산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재판활동운영지원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사업에서는 기록물 소독장비 1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록물보존서고로 반입되는 헌법재판 관련 주요 사건기록물 등은 적절히 소독되어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존 1대의 기록물 소독장비에 대해서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신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1년간 이에 대한 무상보증 및 점검이 가능하므로 소독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섯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연구활동 사업 예산 중 비교헌법연구 총서 신규 발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이 1,500만원 순증되었는데,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총서 발간을 위해 내부 인력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외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면 내부인력과 외부 전문가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며 차별화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국제교류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예산 중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예산(2,448만원)은 헌법 재판소장(동부인)이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동부인) 참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운영 등과 관련하여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체 국제교류 사업 예산(6억 1,400만원)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통상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운영 비용이 헌법재판소 예산이 아니라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개최 내역사업 예산(1억 8,550만원)은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으로서 서울에서 재판관 국제회의 및 연구관 국제회의를 교차로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관례에 따라 컨퍼런스 참가기관의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에서 정한대로 컨퍼런스 참가기관 즉 회원국 등이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AACC 이사회 등을 통한 회원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곱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정보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확충 사업 내 신규 사업(11억 500만원)으로 법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모델로 서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과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시스템을 통하여 서증을 관리하려는 헌법재판사건의 범위 및 관리 대상 자료에 대한 검토, 증인 및 기일 관리 기능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게 될 재판관 및 연구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II. 검토의견

1.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

가.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검토

(1) 헌법재판소 간행물³⁾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업무 지원 등을 위한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에서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를 발간하고, 헌법 및 헌법 재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재판 자료확충 사업’에서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공보, 헌법논총,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물 등을 발간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간행물 및 발간 목적 >

예산사업	간행물	발간 목적
재판활동 운영지원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
재판자료 확충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협력·교환자료로 활용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축적된 판례의 분석·정리·발간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 도모
	헌법재판소공보	헌법재판소의 주요 행정사항 및 판결에 대한 대국민 공개
	헌법논총	헌법·헌법재판 관련 논문의 공모 및 논문집 발간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 헌법재판에 활용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발표한 각종 연설문 등 발간을 통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의 길잡이로 활용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물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외국판례,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함으로써 헌법재판 지원 강화 및 국제교류자료 확충

3)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헌법실무연구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 제외

(2)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①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예산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사업은 역대 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22명)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구술기록 수집) 사업⁴⁾’의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⁵⁾으로 2025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동 사업을 시작한 2023년부터 동일한 금액임.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예산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2024.9 ⁶⁾		2025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안	집행
	30	30	30	-	30	-

자료 : 헌법재판소

4)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1기~ 4기 재판부) 수행한 후 잠정 보류하였으며, 구술자의 퇴직 기간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사업을 재개할 예정임.

5)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발간 사업’은 재판활동 운영지원과 관련된 기록물 연관 사업이므로 ‘기록물 관리 및 보존’ 내역사업이 편성된 ‘재판활동운영지원사업’에 함께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재임기간 동안의 연설기록을 모아 편찬한 자료인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은 ‘재판자료 확충사업’으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연설기록과 함께 헌법재판활동 경험 등을 면담형식으로 풀어낸 구술기록인 구술총서는 ‘재판활동운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10월말 발간 예정임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 중 공개에 동의한 구술자의 녹취문과 구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⁷⁾ 구술기록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어체로 되어있는 녹취문을 구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한 것이 구술총서라고 볼 수 있음⁸⁾.

< 사이버역사관 서비스 현황 >

재판부 등 구분	사이버역사관 서비스 현황
1기 재판부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를, 김양균 재판관
2기 재판부	김용준 재판소장, 황도연, 정경식 재판관
3기 재판부	윤영철 재판소장, 김영일, 송인준 재판관
4기 재판부	이강국 재판소장,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사무처	변정일 사무처장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현황⁹⁾ >

회계연도	발간 현황
2023	총 2권, 각 300부 발간 - (제1권)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 (제2권)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 및 변정일 초대 사무처장
2024	총 2권, 각 600부 발간 예정 - (제1권)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 - (제2권)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7) <http://history.ccourt.go.kr>

8) 구술총서와 사이버역사관 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이버역사관의 경우 구술기록 수집 사업의 결과물인 녹취문과 관련 동영상 등을 서비스하는 것이고, 구술총서의 경우 구어체로 되어있는 녹취문을 운문하는 과정에서 구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 표시, 동일 주제별로 구성 및 관련 콘텐츠(사진, 기록 등)를 추가·구성하여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9)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3회계연도 예산요구 시, 1권 1,000부 기준이었으나 발간 계획 단계에서 2권으로 권수가

2025	총 2권, 각 600부 발간 예정 - (제1권) 윤영철 제3대 헌법재판소장 - (제2권) 헌법재판소 3기 재판부
------	--

자료: 헌법재판소

② 재판자료 확충사업 간행물 발간 예산

□ 헌법재판소는 재판자료확충 세부사업에서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등 각종 간행물에 대한 발간(헌법재판자료 등 번역물의 경우 번역료 포함) 예산으로 2025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예산(1억 8,900만원) 대비 2,900만원(15.3%)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으로서 해당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기 보다는 실집행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판자료확충 사업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부진으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 등에 대하여 국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음.

늘어남에 따라, 발간 기획 및 편집 등의 비용이 고려되어 발간부수를 600부(각 300부)로 조정하였으며, '24년부터는 초기 발간 기획 및 디자인 구성 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어 2권 총 1,200부(각 600부)로 발간 예정입니다.

< 2025년도 재판자료 확충사업 중 간행물 발간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	2025 예산안
	예산	집행액	불용액		
▷ 재판자료확충	420	402	18	470	386
간행물 발간 예산(일반수용비)	204	186	18	189	160
①~⑦합계 ¹⁰⁾	176	158	18	176	156
①~⑧합계 ¹¹⁾	176	158	18	189	160
①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7	8	△1	7	7
② 헌법재판소판례 요지집 추록 발간	14	11	3	14	12
③ 헌법재판소결정 해설집 발간	9	6	3	9	9
④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37	38	△1	37	37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2	36	△4	32	32
⑥ 헌법논총 발간	27	17	10	27	17
⑦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¹²⁾	50	42	8	50	42
⑧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	-	-	13	4
⑨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28	28	-	-	-
• 도서관자료 구입	216	216	-	266	226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오디오북서비스 제공	-	-	-	15	

출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10)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발간(계획)된 간행물 발간 예산 합계

11) 2025년 발간 계획된 간행물 기준 발간 예산 합계

12)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은 외국판례나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부 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번역료가 주된 예산임

(3)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사업에 대한 검토; 간행물 발간수량 조정 및 예산 감액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후 거의 동일한 수량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동일한 배부처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¹³⁾, 2025년에도 판례요지집 추록을 350부에서 300부로 발간수량을 조정한 것 외에는 동일한 수량의 간행물을 동일한 배부처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 기기를 통한 정보 소비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해당 간행물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¹⁴⁾을 고려할 때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 간행물의 적정 배부수량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한 발간수량 축소가 필요해 보임.

특히 간행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헌법재판소 내부 배부 및 재고 수량 확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19년 말에 배부처를 대상으로 발간물 활용실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고량을 축소하여 발간예산 및 발간수량을 대폭 감축한바 있음

14) 판례요지집의 경우 PDF 파일 형식이 아닌 텍스트 형식으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 간행물 배부처(24년 기준) >

(단위: 권)

배부처		영문 판례집	판례 요지집	결정 해설집	판례집 (x2회)	공보 (x12회)	헌법 논총	주요인사 구술총서
내부	각 부서, 연구관, 도서관 등 (재고)	139 (120)	92 (88)	131 (55)	137 (60)	132 (62)	133 (53)	123 (31)
	국회	30	3	5	31	30	30	23
외부	법원·검찰	2	16	37	37	34	24	112
	정부기관	3	44	69	52	59	60	30
	대학 도서관	30	89	107	99	99	106	126 법전원 50
	법조계	1	15	25	20	19	20	17
	언론사	—	3	4	4	4	4	—
	전직 주요인사	12	—	67	61	61	70	78
	대사관, 외국기관	463	—	—	—	—	—	—
	기타							10
총 발행수		800	350	500	500	500	500	600

자료: 헌법재판소

- 첫째, 헌법재판소는 주요인사 구술총서를 600부 발간하고 있고 2025년에도 동일한 수량을 발간·배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¹⁵⁾은 300부('25년 예산상 계획), 판례요지집은 300부('25년 예산상 계획, '24년 350부 발간), 그 외 판례집, 결정해설집 등은 대부분 500부 발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발간수량 축소가 필요해 보임.

15)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은 헌법재판소장의 재임기간 동안의 연설기록 등을 모아 편찬한 자료이고,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연설기록과 함께 헌법재판활동 경험 등을 면담형식으로 풀어낸 구술기록임.

특히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구술기록관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발간물의 목적이 기록 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발간물 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둘째, 헌법재판소는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800부 발간하면서 내부에 139부 배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발간물 중 내부 배부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내역사업)은 외국에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문을 엄선하여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 성과를 외국에 적극 홍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정보교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동 판례집을 내부에 139부 배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보고서의 내부 배부 수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헌법재판소는 총 발행수량의 5%에서 25%¹⁶⁾까지 재고수량(추가 요청시 배부를 위한 자체 보관용)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며 과도한 재고수량은 비용과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는바 재고에 대한 수요 부서 및 수량을 조사하여 적정 재고수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향후 130부 이상 내부에 배부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결정해설

16) 2024년 기준으로 판례요지집의 경우 350부를 발행하면서 88부(25%)를 재고수량으로 확보하고 있음

집, 헌법재판소판례집 등의 경우에도 판례요지집이 92부 배부되는 것을 참고하여 헌법재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배부하도록 조정하는 등 실소요를 감안하여 발간 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및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의 발간수량 축소와 전반적인 간행물 재고수량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⁷⁾.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불필요한 콘텐츠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과 디자인 단계, 편집 구성 단계, 인쇄 및 제작 단계 등에서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17) 각 간행물의 기본 발간수량은 500부에서 450부로 축소(내부 배부수량 100부, 재고수량 총 발행수량의 10%),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600부에서 450부로 축소, 영문판례집 800부에서 650부 150부 감소(내부배부 수량 100부(재고포함)로 축소)할 경우 약 950만원 가량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발간부수 조정 시 감액 예산 추계>

(단위 : 천원)

사업	발간물 명	예산			산출내역 (단가×페이지×부수)
		예산안	조정안	증감	
재판자료 확충	영문판례집	7,000	6,490	△510	52.55원 × 190 × 650
	결정해설집	6,000	4,037	△1,963	15.31원 × 586 × 450
	판례집	36,400	32,274	△4,126	35.86원 × 1,000 × 450 × 2회
	공보	32,126	32,076	△50	38.57원 × 154 × 450 × 12개월
	헌법논총	3,000	2,871	△129	25.52원 × 250 × 450
재판활동 운영지원	주요인사 구술총서	30,000	27,300	△2,700	(30,333원 × 2세트) × 450
	합계			△9,478	

*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나.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검토

- 헌법재판연구원은 2025년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비교헌법연구 총서 등 4종의 간행물을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¹⁸⁾,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2025년에 1억 480만원의 예산¹⁹⁾이 편성됨.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종류 및 발간 목적 >

간행물	발간 목적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각국의 최신 헌법재판결정과 헌법쟁점이 포함된 사법부 판결을 정확·신속하게 번역 및 분석하여 한국학계 등에 공유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비교헌법연구 총서	·비교헌법학에 대한 다각적·지속적인 연구 및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헌법재판 실무에 공헌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학계 논의를 고도화하고 실무에 체계적 헌법재판 심사기준과 시사점 제시

*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교재 등 제외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18) 2024년까지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등 3종 발간

19) 국외통신원 운영 360만원 제외

< 2025년도 간행물 발간 예산 및 배부수량(계획) >

(단위 : 만원, 권)

연번	간행물	2025년 예산	배부수량			배부 시기
			내부	외부	합계	
1	세계헌법재판조사 연구보고서	1,080	헌법재판연구원 30 헌법재판소 130	99	259	격월
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3,100	헌법재판연구원 30 헌법재판소 130	489	649	3, 9월
3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3,400				6, 12월
4	비교헌법연구 총서	1,500				연 1회
합계		10,480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배부처 및 평균 1회당 배부수량(2023년 기준) >

배부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연2회 발간)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연2회 발간)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연6회 발간)
내부	헌법재판소	124	124	124
	헌법재판연구원	28	28	28
	(재고)	41	22	18
외부	국회(도서관 포함)	35	44	51
	법원·검찰	75	78	—
	정부기관	54	51	—
	대학, 도서관	77	113	—
	법조계(학회, 연구원 등)	21	21	7
	전직 주요인사, 재판소 소관 위원회 외부 위원 등	150	219	28
	외국기관 등	15	—	—
회당 평균 발행수		620 (반기별 1회당 9~11종)	700	256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원의 간행물 또한 헌법재판소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수량의 적정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²⁰⁾.

- 첫째, 2023년 기준으로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의 발간·배부 현황 중 내부 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간행물을 헌법재판연구원에 28부 배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연구원 현원이 2023년 기준 28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원에게 간행물을 배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소요를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배부되도록 발간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간행물의 외부 배부 계획(1회 배부, 2025년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99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등의 경우 489부를 배부(계획)하고 있는데²¹⁾, 배부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전직 인사 등에 대한 배부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배부 수량을 조정함으로써 발간 수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 간행물의 경우 대부분 내부 외부 포함하여 총 500부 발

20)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간행물 관련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회성으로 발간 부수를 조정한 적은 있으나, 일괄적으로 수량을 조정한 적은 없음.

21)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와 그 외 보고서 등의 발간수량 차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의 경우 최신 세계헌법판례,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관련 법령 등을 조사(번역) 및 연구하여 국내학계 또는 실무에 리포트 형태로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해당 보고서의 활용도가 높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 직원과 국회, 유관 연구기관 위주로 배부하고 있고, 그 외에 보고서 및 학술지의 경우 국내학계 및 헌법재판실무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수반된 연구성과물이므로, 해당 연구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유관되는 내부직원, 행정기관·국회·법원·검찰 등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간·배부되고 있으므로 발간부수를 축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임.

- 셋째, 헌법재판연구원의 간행물에 대한 재고수량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서의 수요와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적정 재고 수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도 예산 절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간행물의 발간·배부 수량의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²⁾. 또한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편집 구성 단계, 인쇄 및 제작 단계 등에서의 비용 절감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2)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 또는 헌법재판 학술지의 경우, 편수/논문분량 등에 따라 인쇄비가 상이하므로, 발간 회차별로 지출예산이 다르고 연구보고서 및 헌법재판 학술지의 발간부수를 500부로 조정할 경우 발간예산의 10~14%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2025년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의 10% 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건비(1001-1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²³⁾에게 매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5,900만원(3.8%) 증액된 34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인건비	30,995	33,533	34,792	1,259	3.8%
보수(110-01)	29,389	31,760	32,893	1,113	3.6%
기타직보수(110-02)	1,431	1,539	1,661	121	7.9%
연가보상비(110-05)	175	234	238	5	2.0%

자료: 헌법재판소

23) 직제상 정원 352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2명(청원경찰 5명, 전문임기제 17명)

나.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인력의 전문임기제 운영 관행 적절성 검토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²⁴⁾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7명을 전문임기제로 두고 기타직 보수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12명, 특수분야인 통번역(4명) 및 노무(1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5명의 전문임기제를 두고 있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시간선택제를 포함하여 전문임기제 가급 7명, 전문임기제 나급 5명, 전문임기제 다급 5명임.
-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 12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을 위한 법제연구 및 조세연구를 하는 법제연구관 및 조세연구관 각 1명,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등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연구원 6명²⁵⁾,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24)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5) 독어 2명, 영어 3명, 일어 1명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연구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에 헌법연구위원 1명이 소속된 것을 제외하고 11명의 연구인력은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소속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제연구관²⁶⁾ 및 조세연구관²⁷⁾의 경우 법제처 및 국세청 직원으로 법제처 및 국세청 고용휴직 후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로 채용되어 1년(임기) 근무 후 원 소속 부서인 법제처 및 국세청으로 복귀하며²⁸⁾²⁹⁾, 헌법연구위원은 헌법 등 다양한 분야(노동법, 행정법, 사회학, 법철학 등)의 대학 교수로 주 2일 8시간씩 16시간 근무함³⁰⁾.

26) 헌법재판 관련 법령 해석의견 제시, 관련 법제자료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27) 조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 조세 법령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8)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예규]

제81조(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① 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이하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이라 한다)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이외의 기관

29) 실질은 법제처 및 국세청 파견으로 볼 수 있음

30) 공고 및 시험 등의 채용절차는 생략되며, 채용의사 확인 및 소속대학 협의를 통해 임용함. 임기 1년이며 연장 가능함(헌법재판소 제출자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제70조(시험의 공고) ④ 사무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 현황 >

직급	인원	업무내용	소속/부서	비 고
전문임기제 가급	1명	조세 연구업무	연구부	조세연구관
전문임기제 가급	1명	법제 연구업무		법제연구관
전문임기제 가급	1명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조사·연구		헌법연구원
전문임기제 나급	5명			
시간제전문임기제 가급	4명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연구부3 헌법재판연구원1	헌법연구위원
전문임기제 다급	3명	통번역	사무처 (국제과1 AACC지원과1 자료편찬과1)	조사관
전문임기제 다급	1명	노사협력 및 근로자 관리(공인노무사)	사무처 (인사과)	조사관
시간제전문임기제 다급	1명	통번역	사무처 (AACC지원과)	조사관
계	17명			

자료 : 헌법재판소

□ 한편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연구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³¹⁾은 정원 기준으로 66명³²⁾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인력의 약 17%(연구부 소속 전문임기제 11명)를 헌법재판소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임기제로 운

31)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研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2) 헌법재판연구원 근무 9명 제외

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직제상 정원(352명)의 4.8%에 해당함.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원, 법제연구원, 조세연구원,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연구관과 직무범위가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전문임기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특정한 기간 동안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정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는 인력임³³⁾.

□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 중 특히 헌법연구원은 헌법재판의 중요 쟁점에 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판례 및 학설 등의 조사·연구와 외국 주요결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업무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

33)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

- 생각건대 헌법재판소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자리인 헌법연구원을 전문임기제로 두는 것은 정원 제한, 유연한 인력 운용 등의 이유일 수 있으나, 조직의 필수 인력을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전문임기제로 운영하는 관행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의 어려움, 우수 인재 유치와 유지의 어려움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을 위한 필수 인력은 직제 외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 범위 내에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 예상 규모 감액조정 필요

- 헌법재판소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335억 3,300만원) 대비 12억 5,900만원(3.8%) 증액된 34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해당 증액분은 인력 증원과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액 등이 반영된 것임.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5년의 경우 2024년 대비 인력 증원 및 직급조정(직제상 정원 4명, 직급조정 4명, 기타직 2명)이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예산 소요분 3억 321만원과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인상률 3% 인상 등의 증액 소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과도한 인건비

불용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률을 살펴보면, 2020년도 7.3%, 2021년도 6.7%, 2022년도 4.6%, 2023년도 2.7%로 불용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인건비의 연례적인 과다 불용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액을 2022년 동결하였고, 2023년도 또한 2022년도 보다 1.9%만 증액하여 편성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또한 2023년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은 1.6%이고³⁴⁾, 대법원의 경우에는 일반 인건비 불용률은 0.1%, 소속기관 인건비 불용률은 0.6%³⁵⁾ 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2024년도의 경우에는 2023년 대비 인건비 예산이 6.2% 증액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무차장 공석으로 1억 3,000만원,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으로 7억 2,900만원 등 8억 5,900만원의 불용액이 추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하반기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추가 및 연가보상비 불용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불용액은 8억 5,9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³⁶⁾.

3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2024.7., 12p

35)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 2024.8., 8p

36) 2021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예산안 심사 당시 헌법재판소는 17억 4,500만원의 불용액을 예상했으나('21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고) 실제 불용액은 21억 1,300만원으로 3억 6,800만원 차이가 있었음.

< 2024년 인건비 불용 예상액 >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금액
사무차장 공석	130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	729
계	859

자료 : 헌법재판소

< 최근 5년간 인건비 불용 사유 및 불용액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합계	헌법연구관 겸임	휴직·퇴직 등 결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고위직 보수동결	기타	
2019	27,905	26,403	1,502	240	1,020	-	194	48 (연가보상비)	5.4
2020	29,578	27,377	2,201	250	1,409	67	285	190 (국외연수 과다편성)	7.3
2021	31,280	29,535	2,113	274	1,664	17	100	58 (연가보상비)	6.7
2022	31,280	29,813	1,424	257	957	-	153	57 (연가보상비)	4.6
2023	31,860	30,995	865	257	566	-	-	42 (연가보상비)	2.7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은 휴직·퇴직 등에 따른 정원 미달 운영, 헌법연구관의 겸임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³⁷⁾. 일부 결원은 당해

37) 2023년 기준, 불용액의 91.7%에 해당함

연도 헌법재판소의 소극적인 인사운용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헌법연구관의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따른 불용액은 헌법재판소의 휴직·퇴직 현황 및 채용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은 2023년도 대비 10.2%(2024년 대비 3.8%) 예산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상당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휴직 및 퇴직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
휴직	20	29	35	42	34
퇴직	18	23	26	38	24

자료: 헌법재판소

- 먼저, 헌법연구관의 휴직·퇴직 등에 의한 결원 운영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됨.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육아휴직 등 사유 발생 시 일반직과 달리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2023년 및 2024년 휴직한 헌법연구관 모두 충원하지 않았으며, 퇴직한 헌법연구관의 경우에도 모두 퇴직 직후 바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매년 1회 정규 채용절차³⁸⁾를 거쳐

38) 임용 계획 공고(9월), 원서 접수(9월), 서류심사(10월), 인성검사(10월), 집단토의면접(11월), 개별면접(11월),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재판관회의 상정·의결 및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해 2월 1일 임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안내 참고)

다음연도에 해당 결원을 보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³⁹⁾.

따라서 2025년에도 헌법연구관 휴직·퇴직 등에 의한 결원 운영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는데,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휴직 및 퇴직 등 결원 미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2023년은 4억 7,1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24년은 3억 6,700만원으로 추정됨.

< 2023년도 휴직(6개월 이상)·퇴직 결원 보충 내역 >

(단위: 명)

구분		2023년	
		휴직(6개월 이상 ⁴⁰⁾ 인원	보충인원
헌법연구관	휴직	4	0
	퇴직	6	6 (2024년 정규채용시 총원)
일반직 등	휴직	18	15
	퇴직	29	28

주 1) 정무직 제외

자료: 헌법재판소

39) 매년 1회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충원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 업무의 계속성·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이 곤란하고, 아울러 지원자들에게 채용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40)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휴직 및 퇴직 등 결원 미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추정)
연구관	퇴직	356	465	189	151	83
	휴직	226	301	216	320	284
	합계	582	766	405	471	367

자료 : 헌법재판소

-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은 202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사무차장 직위의 장기 공석은 헌법재판소의 행정, 재정, 인사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사유는 2025년에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임.

- 끝으로, 헌법연구관의 겸임 즉 비서실장 겸임과 공보관 겸임⁴¹⁾은 각각 2007년, 2008년부터 지속되어온 인사 관행이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겸임 해제를 고려한 채용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에 대한 감액조정⁴²⁾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7. (생략)

41) 헌법연구관 겸임으로 인한 불용액 2023년 기준 2억 5,700만원, 2024년 기준 2억 6,500만원

42) 일반직 결원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충원할 것을 전제로, 2024년 헌법연구관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 약 3억 6,700만원(추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억 8,000만원은 감액이 가능할 것임.

참고로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약 25억 9,100만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약 5억 1,820만원에 달함.

보임.

특히, 헌법재판소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9.4%(202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한 엄격히 제한되는 예산이므로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인바,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에 대한 감액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본부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00만원(0.5%) 감액된 6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기본경비	6,270	6,991	6,957	△34	△0.5

* 자료: 헌법재판소

나.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 국제교류 사업 예산으로 편성 및 적정 금액으로 조정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5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에 도서심의관 1명을 포함하여 3명이 참석할 것을 기준으로 1,300만원의 대회 참석 여비를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회 참석 여비로 2020년 및 2021년은 각각 890만원, 801만

원 예산이 본부기본경비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미개최 또는 대회 온라인 참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전액 불용되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2020년 및 2021년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명이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할 비용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현황 및 헌법재판소 예산 편성 내역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회차	미개최	86회	87회	88회	미개최	89회
날짜		8.17~8.19	7.26~7.29	8.21~8.25		8.18~8.22
국가		온라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도시			더블린	로테르담		아스타나
예산 (집행)	890만원 (불용)	801만원 (불용)	-	-	-	1,300만원

* 등록비 제외 예산액

자료: 헌법재판소

< 2020년·2021년 및 2025년 예산 편성 근거 >

연도	사업내역	세부 산출내역
2020	■ 대회 참석 여비(220-02)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890만원 · 항공료 2인 4,300천원 · 일비, 숙박비 등 2인 4,600천원
2021	■ 대회 참석 여비(220-02)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801만원 · 항공료 2인 3,870천원 · 일비, 숙박비 등 4,140천원
2025	■ 대회 참석 여비(220-02)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1,300만원 · 일반직(2~3급, 1인) 5,734천원 · 일반직(4~7급, 2인) 7,013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 헌법재판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부기본경비 편성의 적절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⁴³⁾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도서관계의 최대 국제회의로서 각국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모여 각종 현안 및 성과물 등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국가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목적의 국제교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행사 목적과 예산 사용 목적에 부합할 것임.
 - 헌법재판소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 인력, 시설 유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이므로 세계 도서관정보대회(WLIC)와 같은 국제 행사를 기본경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도서심의관(3급) 등 3명이 참석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정원 16명인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규모⁴⁴⁾, 참석자 수 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과거의

43)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제 기구로 도서관의 활동 전반에 걸친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조사, 연구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해 1927년에 설립되었음.

44) 헌법재판소 도서관 정원 및 현원(2024.9.)

구분	계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2	2	2	3	2	2	2
현원	16	1	2	2	2	2	4	1	2

사례⁴⁵⁾, 헌법재판소 다른 국제행사 참석자 수⁴⁶⁾ 등을 감안하면 3명이 동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석자 수를 2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참석 국제행사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공무원 3명 이상이 참석한 국제행사는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알제리 헌법재판소 창립 1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1건 뿐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예산을 본부기본경비 예산이 아니라 국제교류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참석자 수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⁷⁾.

45) 2020년 및 2021년 사례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액 삭감된 바 있음

46) 헌법재판소장 참석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명 이하의 인원이 국제행사에 참석하고 있음.

47) 헌법재판소 제출자료에 따르면 239만원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예산안 (3인, 유럽 기준 계수(0.6) 조정 금액)	조정안 (2인, 카자흐스탄 기준 실소요 금액)	비고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1,300만원 · 일반직(2~3급, 1인) 573만원 · 일반직(4~7급, 2인) 701만원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1,061만원 · 일반직(2~3급, 1인) 599만원 · 일반직(4~7급, 1인) 462만원	일반직 1인 예산 239만원 감액 가능

자료; 헌법재판소

4.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연구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재판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며, 기록물을 관리·보존하고,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업무지원)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부 부별 토론, 연구회 활동 등 지원
 -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국내·외 판례에 대한 검토·분석 및 헌법재판 관련 대내·외 업무협의 등을 위한 판례심사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지급
 -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물 탈산처리 및 정리, 기록물보존서고의 온도·습도 유지 등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통한 재판활동 지원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등 관련 연구주제의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
-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7,700만원(10.3%) 감액된 6억 7,100만원이 편성됨.

〈 2024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판활동운영지원	584	748	671	△77	△10.3
헌법재판업무지원	216	247	267	20	8.1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 경비	246	221	221	-	-
기록물 관리 및 보존	85	54	143	89	164.8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7	10	10	-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0	30	30	-	-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	186	-	△186	△10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업무지원;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전년 수준으로 조정 필요

□ 헌법재판업무지원은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부 부별 토론, 연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번역료·사례금 및 각종 발간비용을 지원하는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수용비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3,960만원) 대비 50%(1,992만원) 가량 증액된 5,9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일반수용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번역료 및 사례금⁴⁸⁾

4,000만원, ② 헌법실무연구 발간비 800만원, ③ 인쇄 및 제본비 등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업무지원 사업 `24년 및 `25년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일반수용비 (210-01)	연구회 운영		
	• 번역료 및 사례금	26,000	40,000
	• 헌법실무연구 발간	6,000	8,000
	• 인쇄 및 제본비	8,000	11,000
	• 단수조정	△400	523
	합계	39,600	59,523
사업추진비 (240-01)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경비 등	194,531	194,531
	연구회 활동지원비	13,000	13,000
	합계	207,531	207,531
합계		247,131	267,054

출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 헌법재판소의 연구회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 모임으로서 헌법실무연구회, 법사상연구회, 통일헌법재판실무연구회, 비교헌법연구회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연구회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연구회에 필요한 경

48) 외부 발표 50만원, 토론 20만원 지급

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음⁴⁹⁾.

-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판례와 헌법재판 관련 이론 및 실무 연구, 법사상연구회는 법사상에 관한 기본지식 습득 및 실천적 연구, 통일헌법재판실무연구회는 통일 대비 헌법재판 실무연구, 비교헌법연구회는 헌법이론·제도 및 중요판례의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구성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헌법재판소 연구회 구성 현황 >

구 분		헌법실무연구회	법사상연구회	통일헌법재판 실무연구회	비교헌법연구회
등록일		2001. 1. 17.	2001. 1. 2.	2016. 7. 1.	2018. 5. 2.
설립 목적		헌법판례와 헌법재판 관 련 이론 및 실무 연구	법사상에 관한 기본지식 습득 및 실천적 연구	통일 대비 헌법재판 실 무연구	헌법이론·제도 및 중요 판례의 비교법적 연구
회장		-50)	이미선 재판관 (2022. 5. 12. ~)	문형배 재판관 (2021. 10. 8. ~)	-51)
간사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회장: 2년, 연임 가능 간사: 1년,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회 원 수	계	620명	78명	23명	91명
	내부	106명	55명	23명	91명
	외부	514명	23명	-	-

자료 : 헌법재판소

49)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① 연구회를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실적 등 제출) 연구회는 당해연도의 연구회의 회원현황, 운영실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익년도 1월말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 재판관이 동 연구회 회장이었으나 9월 퇴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황임

5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기영 재판관이 동 연구회 회장이었으나 10월 퇴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황임

- 헌법재판소는 2025년 예산 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횟수 증가, 외국판례 번역 확대 등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바,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재판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헌법실무연구는 헌법실무연구회의 발표문을 실는 발간물로,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개최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헌법실무연구 발간비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60%대에 머물고 있고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54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쳐 집행률이 64%에 불과함.
- 2024년에는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3,960만원 예산에 대해 2,497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63% 가량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연구회 운영실적 및 예산 현황(2020~2023) >

(단위: 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일반수용비	3,552	2,609	4,000	2,668	3,801	2,567	4,000	2,549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4회, 헌법실무연구 제20권 발간(350부/660면)		발표회 7회, 헌법실무연구 제21권 발간(400부/272면)		발표회 8회, 헌법실무연구 제22권 발간(400부/622면)		발표회 5회, 헌법실무연구 제23권 발간(400부/700면)	

법사상 연구회	세미나 2회, 강독 회 7회	세미나 1회, 강독회 3회	세미나 1회, 강독회 4회	세미나 1회, 강독회 5회
통일헌법 재판실무 연구회	발표회 3회	—	세미나 2회	세미나 4회
비교헌법 연구회	세미나 4회,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번 역집 발간	세미나 7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오 스트리아 헌법재판 소 판례번역집 발간	세미나 4회, 베니스 위원회 보고서 번역 집(2건) 발간	세미나 5회, 베니스 위원회 보고서 번역 집(2건), 영국항소 법원 판례번역집(1 건) 발간

자료 :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예산을 50% 증액할 것이 아니라 2024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예산 집행률 제고에 힘쓰는 한편, 각 연구회 성과 평가를 통한 적정 운영 예산을 각 연구회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기록물 소독장비의 적절한 교체 필요 등

- 헌법재판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⁵²⁾에 따라 기록물보존서고에 기록물 소독장비 2대를 설치하여 기록물의 서고 입고 전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현재 기록물 소독장비는 2009년에 구입한 장비로써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⁵³⁾를 이미 초과하였으며 최근 장비 이상 및

52)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7조(기록물의 보존처리) 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2021. 12. 2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37	46182497	책소독기	7

잘은 고장이 발생하여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의 자산취득비에 기록물 소독장비 구입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기록물 소독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025년 기록물 소독장비 구입 예산안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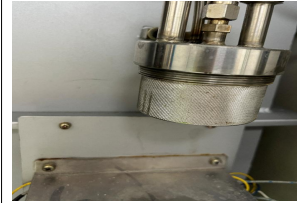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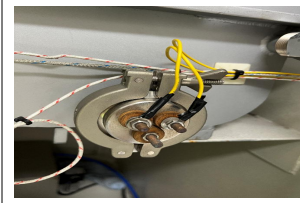
(단위: 천원)

총액	산출내역	비목
85,000	85,000 x 1대	자산취득비 (430-01)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의 소독장비는 산소 차단(질소 주입) 및 소독약제를 통하여 멸균 및 살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노후화로 인하여 장비 내부의 밀폐도가 떨어져 소독효과가 떨어지며, 해당 장비의 단종으로 인하여 주요 부품 구입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함.

<기록물 소독장비 사진>

소독장비(앞면)	소독장비 내부(앞면)	소독장비 내부 (뒷면) 세부사진	
			
		- 진공 배관 부식	- 약제통 연결 배관 부식
			
		- 챔버 온도 조절 히터 삽입부 부품 부식	- 온도센서 부식

자료: 헌법재판소

- 기록물보존서고로 반입되는 헌법재판 관련 주요 사건기록물 등은 중요한 기록물로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노후화된 기록물 소독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건기록물에는 심판사건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증인신문조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송달현황목록 등이 있음.
- 신규 기록물 소독장비는 2025년 2월 중 제작을 시작하여 4월에 기록물보존서고에 설치할 계획임.

기록물 소독장비 구입 세부일정(안)
○ 구입 계획보고 및 조달계약 발주: 2025. 1.
○ 장비제작 및 테스트: 2025. 2.~4.
* 장비 제작 소요기간: 3개월
○ 소독장비 반입 및 설치: 2025. 4.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헌법재판에 대한 전자접수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전자접수율은 높지 않은⁵⁴⁾ 상황이며 헌법재판소는 매년 접수되는 심판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존될 기록물의 양이 줄지 않았다고 설명하므로,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존 1대의 기록물 소독장비도 빠른 시기에 교체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헌법재판사건은 2013년 1,480건이 접수되었으나, 10년 후인 2023년에는 2,591건이 접수되었음.

54) 2024년 9월 말 기준 2024년 전자접수율은 47.5%임.

- 다만, 신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1년간 이에 대한 무상 보증 및 점검이 가능하므로 소독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5년 소독장비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

연도	유지보수 기간	유지보수 주요 과업 내용	예산액	집행내역	기타
2020	20. 1. 1. ~ 20. 12. 31.	- 정기적으로 월 1회 점검	4,290천원	4,290천원	
2021	21. 1. 1. ~ 21. 12. 31.	- 정기점검 이외에 긴급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응해야 함	4,500천원	4,488천원	
2022	22. 1. 1. ~ 22. 12. 31.	- 기계이상 통보를 받을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에 착수해야 하며, 장비를 정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함	4,500천원	4,488천원	
2023	23. 1. 1. ~ 23. 12. 31.	- 장비에 관련된 부품(주요부품)에 이상 발생 시 즉시 교체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유지보수 시행사”가 부담	4,713천원	4,700천원	
2024	24. 1. 1. ~ 24. 12. 31.		4,713천원	상반기 집행액*: 2,355천원	계약금액: 4,710천원
2025	25. 1. 1. ~ 25. 12. 31.	-	5,038천원 ⁵⁵⁾	-	

자료: 헌법재판소

- 소독장비 유지보수비의 경우, 신규 장비가 들어온 4월 이후에는 기존 1대의 장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올해와 유사한 금액에 계약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신규 장비 설치 전까지의 유지보수비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5) 소독장비 유지보수비는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중 기록물 관리 및 보존 내역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편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은 32.5만원을 증액하였다 함.

5.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⁵⁶⁾ 운영지원사업은 헌법, 헌법재판제도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등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18억 6,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37	1,878	1,865	△13	△0.7
헌법재판 연구활동	125	137	146	9	6.6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2	16	16	-	-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60	72	72	-	-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44	43	43	-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1,488	-	-
정보자료실 운영	65	55	55	-	-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19	21	21	-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19	19	19	-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보안	4	5	5	-	-
사이버 강좌 재개발	-	22	-	△22	△100.0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	-	-	-	-	-

자료: 헌법재판소

56)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나. 헌법재판연구활동;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의 필요성 및 예산 검토

-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재판연구활동(내역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1억 3,700만원) 대비 900만원 증액된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는 신규 발간물인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을 위해 1,500만원이 순증되었기 때문임.

< 2025년도 헌법재판연구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37	1,878	1,865	△13	△0.7
헌법재판연구활동	125	137	146	9	6.6
-비교헌법연구총서 발간	-	-	15	15	100

자료: 헌법재판소

-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사업은 비교헌법학 관련 세부주제에 대하여 내부인력과 외부전문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 1권 단행본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발간비용 600만원, 원고료 800만원, 주제선정 회의 수당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비교헌법학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중심 연구분야임에 따라, 이에 대한 단행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연구내용과 형태를 다변화하고 공동연구 및 기획연구, 중점연구가 가능하

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비교헌법총서 발간 예산 추계 근거 >

구분	소 계	원고료	선정회의	발간비용
비교헌법총서 발간	1,500만원	800만원 - 8인× 1,000천원	100만원 -5인×200천원 (주제선정 수당)	600만원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비교헌법연구총서 발간사업과 관련해서는 발간의 필요성, 총서 작성자 및 발간 예산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및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헌법재판연구원의 중심 연구분야인 비교헌법학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려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연구원 발간물 종류(2024년 기준) >

연번	제 목	비 고(발행일 기준)
1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종
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격월
3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연2회

*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교재 등 제외

□ 첫째, 헌법재판연구원은 매년 상당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24년에는 비교헌법연구 보고서로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보고』⁵⁷⁾ 및 『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⁵⁸⁾』 등을 발간한 바 있음. 또한 격월로 최신 세계헌법판례 등을 소개하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25년부터 신규로 발간하려는 비교헌법연구총서가 기존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과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는 비교헌법연구, 사회변화와 헌법, 헌법원리와 국가권력, 법령 및 제도연구, 헌법재판연구, 통일헌법연구, 헌법이론과 실무 등 7종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2024년) >

분류체계	발간물 제목	수행부서
비교헌법연구 (5)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	비교헌법연구팀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비교헌법연구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비교헌법연구팀
	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	기본권연구팀
	디지털 전환의 기본권적 문제상황과 대응체계	비교헌법연구팀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57) 비교헌법연구팀 책임연구관 수행, 참고문헌 제외 97p

58) 기본권연구팀 책임연구관 수행, 참고문헌 제외 54p

헌법(2)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제도연구팀
헌법원리와 국가권력(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비교헌법연구팀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법령 및 제도연구(3)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도연구팀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제도연구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기본권연구팀
헌법재판연구 (1)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기본권연구팀
통일헌법연구 (1)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	제도연구팀
헌법이론과 실무(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다문화 시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기본권연구팀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행정기본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기본권연구팀
	인공지능 법관 관련 헌법적 쟁점의 검토	제도연구팀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 둘째, 비교헌법총서가 기존의 보고서와 연구범위, 심층성 등의 차이가 있어 별도 발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교헌법학⁵⁹⁾은 헌법재판연구원의 핵심 업무이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또한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 내부 인력이 외부 인력과 함께 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하

59) 자국과 타국의 헌법전을 기초로 하여 주로 헌법현상을 역사적·기능적 방법으로 검토하는 복수국가간 헌법의 비교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헌법과 제도 및 헌법재판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헌법재판에 필요한 비교법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고 심도 깊은 이론적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의 헌법 쟁점 혹은 특정 국가의 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외부인력을 집필진으로 섭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은 연구기관인 만큼 내부 인력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⁶⁰⁾, 외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신속한 재판 사건 처리를 위한 중요 쟁점 사전 연구라는 명확한 연구목적을 수립하고, 외부 집필진의 뚜렷한 역할 분담과 차별화된 쟁점 선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이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인력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외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면 내부인력과 외부 전문가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며 차별화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0) 참고로 헌법재판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경우 해외장기연수 경험이 있는 법관들을 주축으로 한 외국사법제도연구회에서 「외국사법제도연구」 보고서 등을 매년 발행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연구원도 해외 연수 중이거나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헌법연구관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헌법재판소 내부 연구모임으로 비교헌법연구회 등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부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6. 국제교류(1034-30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교류 사업은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석과 개최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활동 등을 통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5억 8,700만원) 대비 2,700만원(4.6%)이 증액된 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국제교류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교류	501	587	614	27	4.6
베니스위원회 참석	70	74	74	-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3	30	79	49	163.3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56	55	55	-	-
주요헌법재판기관 등 초청 세미나 개최	20	42	42	-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24	42	24	△18	△42.9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122	121	117	△4	△3.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182	186	186	-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24	37	37	-	-

자료 : 헌법재판소

나.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검토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사업(내역사업)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세계선거재판회의 등 헌법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3,000만원) 대비 4,900만원 증액된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세계헌법재판회의 및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각 4,883만원 및 2,448만원) 등임⁶¹⁾.

< 2025년도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3	30	79	49	163.3

자료: 헌법재판소

-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⁶²⁾가 주도해 출범한 연합체로,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제적인 회의체이며, 120개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정기 총회를 3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음.

61) 그 외 국외자료집 제작을 위한 예산 50만원, 사업추진비 230만원, 국제부담금(세계헌법재판회의의 부담금) 380만원 편성됨

62) 베니스위원회의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로서 1990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산하기구로 출범하여 오늘날 세계적이고, 독립적인 법률자문기구이자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옵서버로, 2006년 6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함

2025년은 제6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정기 총회가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동부인),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2인, 사무처 1인, 총 6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기준으로 4,883만원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편성됨.

- 세계선거재판회의는 전 세계 63개 선거 관련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회의체로서, 2017년 설립되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1차 총회부터 매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은 헌법재판소장(동부인)과 헌법연구관 총 3인 참석을 기준으로 2,448만원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편성됨.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헌법재판소장(동부인) 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만 당초 편성된 예산(2,400만원) 중 약 29%(7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며(당시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숙박비 일부 부담), 3개년은 총회 미개최, 온라인 개최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거나 불용될 예정임.

< 세계선거재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1년도	24	불용	COVID-19로 인해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온라인 개최(도미니카공화국)
2022년도	24	7	재판관1인, 헌법연구관1인 참석(인도네시아) * 일부비용(숙박) 주최 측 부담
2023년도	18	불용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미개최(인도네시아)
2024년도	24	불용(예상)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미개최(콜롬비아)
2025년도	24	-	콜롬비아(예정)

자료: 헌법재판소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참석한 명단을 살펴보면 헌법재판관 1인 및 헌법연구관 1인 총 2인이 참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장(동부인)이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음.

<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자 명단 >

개최년월	개최장소	참석자
2017년 11월	멕시코 산미겔데아엔데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18년 12월	멕시코 칸쿤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19년 11월	멕시코 로스카보스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20년	미개최	
2021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온라인)	재판관 1인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23년 및 2024년	미개최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의 재판일정 및 타 국제회의 참석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판관이 총회에 대리 참석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22년은 비슷한 시기에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재판소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법재판관은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은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개최되는 해이고, 세계선거재판회의 의장국인 콜롬비아의 내부 사정으로 2024년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2025년도 회의 또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개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2025년 세계선거재판회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동부인) 참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이미 실제 소요액(예산요구액) 대비 상당 수준으로 감액(약 40%) 편성되어 최소 소요만이 반영된 상황으로 헌법재판관 참석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필요 최소인원(2인)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⁶³⁾.

향후 헌법재판소는 국제회의 성격, 참석자의 역할, 전례 등을 고려

6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및 연구관 참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2,76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일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지급표]에 근거하여 산출, 항공료는 국적사 요금기준, 편성기준 환율 1,380원/\$).

하여 연례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행될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예산 검토

(1) 회원국 간 분담금 통한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체 국제교류사업 예산(6억 1,400만원)의 59%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AACC 관련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5년 예산안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이사회 등 정례회의 참석 · AACC 행정사무국(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서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참석 · AACC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튀르키예 헌법재판소)에서 주최하는 하계연수 참석	24
AACC 연구사무국 운영	·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국제회의 개최 등 핵심 사업의 지원 및 내실 있는 사무실 운영	117

AACC 연구 컨퍼런스	· 재판관 국제회의 및 연구관 국제회의를 교차로 개최하여 당해년도 연구·조사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회원기관의 최신 헌법재판 실무·판례를 공유하고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	186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 연구사무국 고유 기능으로서 아시아지역 비교헌법 연구·조사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한 연구·조사 성과 공유	37
합 계		364

자료: 헌법재판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로서, 2024년 10월 현재 21개 헌법재판기관⁶⁴⁾이 가입되어 있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목표, 기능, 조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에 따르면, 이사회 및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의 일반 개최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동등한 분담에 의하여 충당되도록 하는 등 재정원칙으로 분담금을 규정하고 있으나⁶⁵⁾ 창설된 지 1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분담금을 도입한 바 없음.

64) 회원기관 현황(가입연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10년) / 러시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11년) / 파키스탄('12년) /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13년) / 아제르바이잔('14년) / 키르기즈, 미얀마('16년) / 인도, 몰디브('19년) / 방글라데시('20년) / 요르단('21년) / 팔레스타인('22년)

6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3조 재정의 원칙

1. 이사회 및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의 일반 개최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동등한 분담에 의하여 충당된다. 단, 각 분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개별 역량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제24조 회원의 재정기여

1. 회원은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4년 9월 태국에서 개최된 AACC 제6차 총회 및 이사회에서도 분담금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회원 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기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현실적 이유로 인하여 분담금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부담⁶⁶⁾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분담금을 통한 운영이 필요함.

특히, 재정적 기여는 회원국들의 연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회원국 간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높이며, 연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통상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⁶⁷⁾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운영 비용이 헌법재판소 예산이 아니라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개의 상설사무국(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및 1개의 총회사무국(총회 개최기관)에서 그 운영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있고, 그간 6회의 총회 등 개최비용을 각 개최기관에서 부담함.

<AACC 상설사무국 설치 현황>

○ 행정사무국(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연구사무국(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한국, 서울

○ 연수및인적자원개발센터(Center for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터키, 앙카라

67) 유사기관인 베니스위원회나 세계헌법재판회의의 경우 기관 운영이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회원국 또는 회원기관의 분담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내역사업) 검토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 컨퍼런스 사업은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으로서 서울에서 재판관 국제회의 및 연구관 국제회의를 교차로 개최하여⁶⁸⁾ 당해 년도 연구·조사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8,550만원임.
- 해당 예산안은 자료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530만원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일반용역비 1억 8,0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용역비는 항공료, 숙박비, 회의장 조성 및 회의 진행 등 비용(임차료, 식음료비 등), 인건비 및 기업이윤 등으로 구성됨.

<AACC 연구 컨퍼런스 2025년도 예산안(일반용역비) 편성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일반용역비)
항공료	7,000
숙박비(2인 기준, 3박)	31,500
회의장 조성 및 회의 진행 등	86,700
인건비 및 기업이윤 등	55,000
합 계	180,200

자료: 헌법재판소

68) < AACC 연구 컨퍼런스 '23년 및 '24년 개최현황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 참고>

- 2023.05.29.-2023.06.01.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참가자; AACC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게스트: 알제리 헌법재판소장, 뉴질랜드 대법관/ 주제; 사법에의 접근: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Access to Justic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 2024.05.27.-2024.05.30.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참가자; AACC 대표단(15개 기관), 게스트: 콘라트 아테나워 재단/ 주제;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Environment))

< AACC 연구 컨퍼런스 '25년 개최계획 >

- 2025.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예정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항공권은 지원하지 않으나, UN 저개발국가(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⁶⁹⁾에 해당하는 회원기관 및 게스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고, 관례상 참가기관의 숙박비는 개최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에 따르면 회원은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게스트 또한 기본적으로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⁰⁾.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에서 정한대로 컨퍼런스 참가기관 즉 회원국 등이 기본적으로 각자의 항공료 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부담할 수 있도록 AACC 이사회 등을 통한 회원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9) 2024년 기준 회원국 중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가 해당됨.

70)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3조 재정의 원칙

1. 이사회 및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의 일반 개최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동등한 부담에 의하여 충당된다. 단 각 부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개별 역량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제24조 회원의 재정기여

1. 회원은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제26조 게스트의 재정기여

1. 게스트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7.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은 헌법재판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전자헌법 재판센터 및 심판사건처리시스템 등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정보 보호활동 강화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운영, 보안취약점 점검 컨설팅 및 재해복구센터 시설임차 등을 통해 중요 디지털 정보보호를 강화
 - (정보시스템 확충) 지능형 헌법재판센터시스템 구축 5단계 사업 추진,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 노후장비 교체와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정보화 환경을 고도화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전자헌법재판센터 등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5,600만원(16.4%)이 증액된 74억 9,9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8,163	6,443	7,499	1,056	16.4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	834	896	925	29	3.2
정보시스템 확충	3,785	1,670	2,494	824	49.3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706	2,004	2,191	187	9.3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1,623	1,637	1,677	40	2.4
일반운영 등	214	236	212	△24	△10.2

자료: 헌법재판소

나. 서증 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확충 사업에 서증⁷¹⁾ 관리시스템 구축을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동 사업의 예산안은 총 11억 500만원으로 일반연구비(260-01) 7억 5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4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내역⁷²⁾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 합계 : 11억 500만원 ☐ 일반연구비 (개발비) : 7억 500만원 ☐ 자산취득비 (상용SW) : 4억

자료: 헌법재판소

71) 서증이란 헌법재판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함.

□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당사자 등이 제출하는 서증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⁷³⁾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변론⁷⁴⁾ 등에서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원과 같이 서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 헌법재판소는 현재 작성문서, 관계기관 제출자료, 서증, 기타 탄원서 등을 별도 분류 없이 내부시스템에 접수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등록⁷⁵⁾하고 있으며, 변론 등 필요시에는 사건별 증거서류 검색 및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파일서버를 활용⁷⁶⁾하여 증거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권한쟁의심판 등 필요적 변론사건⁷⁷⁾의 접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서증 및 증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72) 헌법재판소는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산정된 1억 5,900만원의 감리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감리비와 조달수수료에 대하여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감리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수반되는 필수사업이며 조달수수료와 달리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낙찰차액이 적게 발생함에 따라 감리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감리비 예산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73) 법원의 경우 서증 및 증인 등의 관리기능을 하는 사건기록부어 시스템을 기 구축하고 있음.

74) 서증은 모든 사건에서 제출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히 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즉각적인 서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75) 2002년에 구축되어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심판사건포털시스템 내 등록되어 있음.

76) 변론 시 공유파일서버에 ‘변론사건문건’ 폴더를 생성하고, 하부 폴더에 ‘사건번호 + 사건명’으로 각 사건별 폴더를 생성하여 관리함,

- 변론서면: 사건 관련 모든 문건을 심판사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일자순으로 업로드

- 갑호증: 청구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서류 업로드

- 을호증: 피청구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서류 업로드

77)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이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은 임의적 변론사건임.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필요성이 높아졌고, 전자기록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별도의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함.

< 최근 10년 유형별 헌법재판사건 접수 현황 >

연 도	탄핵심판 (A)	정당해산 심판(B)	권한쟁의 심판(C)	합계 (A+B+C)	위헌법률 심판(D)	헌법소원 심판(E)	합계 (D+E)	총 합계 (A+B+C+D+E)
2015	-	1	8	9	37	1,813	1,850	1,859
2016	1	-	9	10	20	1,921	1,941	1,951
2017	-	-	2	2	35	2,589	2,624	2,626
2018	-	-	2	2	17	2,408	2,425	2,427
2019	-	-	6	6	31	2,693	2,724	2,730
2020	-	-	5	5	20	3,216	3,236	3,241
2021	1	-	2	3	38	2,786	2,824	2,827
2022	-	-	5	5	43	2,781	2,824	2,829
2023	4	-	10	14	25	2,552	2,577	2,591
2024. 9.	1	-	4	5	15	1,805	1,820	1,825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법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서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모델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안)
○ (서증관리) 심판사건 중 서증 관리가 필요한 사건(헌나, 헌다, 헌라,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중 주요사건)에 대하여 서증을 관리(등록, 병합, 삭제 등)하고 서증기록을 열람하는 전용 뷰어 제공
○ (증인 및 기일 관리) 청구인, 이해관계기관 측으로부터 신청받은 증인, 참고인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신청 증인, 참고인에 대한 채택 및 기일관리 기능 제공
○ (추진 계획) 2025년 4월~5월: 계약추진, 6월~11월: 사업추진, 12월: 사업종료

자료: 헌법재판소

- 먼저, 서증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증을 관리하려는 헌법재판사건

의 범위 및 관리 대상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서증 관리시스템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등 필요적 변론사건 전체와 위헌법률사건·헌법소원사건 중 중요사건에 대하여 서증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필요적 변론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존재하여 양 당사자가 증거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증거자료의 관리 필요성이 높으나 매년 접수건수가 연 2~14건에 불과함.
-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중 주요사건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떤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볼지는 재판부가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의 성격상 양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양 당사자 구조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서증 관리시스템 이용 필요성, 심판청구 현황 및 심판진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에서 관리할 헌법재판사건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서증이 어느 정도 제출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관리 대상 문건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신규 시스템을 통해 관리

하는 문건을 서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청구인, 이해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의견서 등 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문건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증인 및 기일 관리 기능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의 실시 횟수와 증인, 참고인 수를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져 해당 기능을 서증 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최근 10년 변론 실시 횟수* 및 증인·참고인 수 >

연 도	변론 실시 횟수	증인 수	참고인 수	연도	변론 실시 횟수	증인 수	참고인 수
2015	7 (6)	-	14	2020	11 (5)	-	11
2016	9 (6)	-	19	2021	8 (2)	-	4
2017	20 (2)	26	6	2022	8 (6)	-	19
2018	4 (3)	-	8	2023	8 (2)	4	4
2019	7 (2)	2	4	2024. 9	10 (2)	-	4

* 괄호 안의 숫자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변론 실시 횟수임.

자료: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편집

- 헌법재판소는 증거관리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1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만큼, 해당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게 될 재판관 및 연구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2021 ~ 2025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일반회계(총 액)	52,602	52,602	48,802	52,862	52,862	50,072	55,492	55,492	53,752	56,766	58,526
① 인건비 (직접수행, 1001-150)	31,280	31,280	29,167	31,237	31,237	29,813	31,860	31,860	30,995	33,533	34,792
◦인건비(110)	31,280	31,280	29,167	31,237	31,237	29,813	31,860	31,860	30,995	33,533	34,792
② 본부기본경비 (직접수행, 1011)	5,642	5,621	4,962	6,346	6,346	5,680	6,506	6,506	6,270	6,991	6,957
◦인건비(110)	538	538	427	726	726	639	741	741	682	800	830
◦운영비(210)	2,510	2,475	2,231	2,547	2,547	2,412	2,967	2,967	2,883	3,037	3,249
◦여 비(220)	154	154	10	145	145	112	140	140	140	143	179
◦업무추진비(240)	496	496	462	443	443	435	466	466	464	540	600
◦직무수행경비(250)	1,698	1,712	1,621	1,748	1,748	1,669	1,788	1,788	1,720	1,764	1,785
◦보전금(310)	2	2	-	2	2	1	2	2	-	2	2
◦민간이전(320)	120	120	87	155	155	135	158	158	137	173	177
◦유형자산(430)	124	124	124	117	117	117	244	244	243	131	135
◦무형자산(440)	-	-	-	462	462	160	-	-	-	400	-
③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직접수행, 1011)	710	731	674	451	451	408	461	461	416	441	426
◦인건비(110)	176	176	166	-	-	-	-	-	-	-	-
◦운영비(210)	309	344	327	275	275	251	285	285	253	271	264
◦여 비(220)	16	16	1	14	14	12	13	13	13	13	16
◦업무추진비(240)	52	52	46	44	44	39	44	44	44	44	45
◦직무수행경비(250)	83	69	69	83	83	73	83	83	71	79	69
◦민간이전(320)	34	34	30	-	-	-	-	-	-	-	-
◦유형자산(430)	40	40	35	34	34	34	36	36	36	34	32
④ 국선대리인보수등 (직접수행, 1031)	127	127	106	127	127	106	127	127	119	127	127
◦운영비(210)	127	127	106	127	127	106	127	127	119	127	127
⑤ 재판활동운영지원 (직접수행, 1031)	586	586	544	649	658	627	605	605	584	748	671
◦인건비(1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운영비(210)	109	109	88	217	226	206	124	124	103	219	141
◦여 비(220)	1	1	1	1	1	-	1	1	1	1	1
◦업무추진비(240)	190	190	179	184	184	174	192	192	191	209	209
◦직무수행경비(250)	273	273	263	234	234	233	246	246	246	221	221
◦유형자산(430)	-	-	-	-	-	-	30	30	30	85	85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⑥ 본부운영지원 (직접수행, 1032)	4,093	4,093	3,720	3,835	3,835	3,536	3,926	3,926	3,587	4,624	4,292
◦인건비(110)	1,233	1,233	1,183	1,264	1,264	1,225	1,264	1,304	1,224	1,351	1,406
◦운영비(210)	904	904	834	721	721	681	796	796	765	975	770
◦여 비(220)	30	30	3	33	33	11	33	33	29	33	33
◦업무추진비(240)	26	26	16	24	24	20	26	26	20	26	26
◦연구용역비(260)	45	45	41	45	45	41	50	50	45	50	50
◦민간이전(320)	230	230	195	244	244	212	242	242	199	251	258
◦건설비(420)	1,454	1,454	1,277	1,353	1,353	1,197	1,306	1,306	1,138	1,823	1,475
◦유형자산(430)	171	171	171	151	151	151	169	169	169	115	275
◦무형자산(440)	-	-	-	-	-	-	-	-	-	-	-
⑦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직접수행, 1033)	1,863	1,863	1,819	1,858	1,858	1,825	1,867	1,867	1,837	1,878	1,865
◦운영비(210)	1,707	1,707	1,696	1,704	1,704	1,689	1,710	1,710	1,690	1,710	1,719
◦여 비(220)	30	30	-	30	30	12	30	30	23	29	29
◦업무추진비(240)	25	25	23	23	23	23	26	26	24	26	26
◦연구용역비(260)	-	-	-	-	-	-	-	-	-	22	-
◦보전금(310)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유형자산(430)	65	65	64	65	65	65	65	65	65	55	55
⑧ 해외연수 (직접수행, 1034)	522	522	455	518	518	518	580	580	580	506	565
◦운영비(210)	156	156	118	147	115	114	169	146	146	123	125
◦여 비(220)	366	366	337	371	403	403	411	434	434	383	400
⑨ 국제교류 (직접수행, 1034)	554	554	298	499	499	449	573	573	501	587	614
◦운영비(210)	354	354	276	280	280	270	351	351	336	358	355
◦여 비(220)	164	164	17	188	188	152	182	182	132	188	219
◦업무추진비(240)	32	32	2	28	28	25	37	37	30	37	37
◦해외이전(340)	4	4	3	3	3	3	4	4	3	4	4
⑩ 재판자료확충 (직접수행, 1035)	416	416	356	406	406	367	420	420	402	470	386
◦운영비(210)	200	200	140	190	190	151	204	204	186	204	160
◦유형자산(430)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66	226
⑪ 헌법재판정보화 (직접수행, 1035)	6,498	6,498	6,421	6,618	6,617	6,451	8,242	8,242	8,163	6,443	7,499
◦운영비(210)	3,864	3,864	3,821	4,181	4,181	4,053	4,181	4,399	4,361	4,771	5,004
◦업무추진비(240)	2	2	-	2	2	1	2	2	2	2	2
◦연구용역비(260)	1,026	1,026	994	873	873	842	873	1,862	1,821	657	1,025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유형자산(430)	1,606	1,606	1,606	1,562	1,562	1,557	1,562	1,979	1,979	1,012	1,468
⑫ 전자도서관운영 (직접수행, 1035)	286	286	280	293	294	292	300	300	297	393	307
◦인건비(110)	5	5	4	5	5	5	6	6	6	5	5
◦운영비(210)	121	121	121	128	129	129	145	145	145	146	146
◦연구용역비(260)	156	156	151	156	156	154	145	145	142	238	152
◦유형자산(430)	4	4	4	4	4	4	4	4	4	4	4
⑬ 예비금 (직접수행, 1036)	25	25	—	25	25	—	25	25	—	25	25
◦예비비및기타(710)	25	25	—	25	25	—	25	25	—	25	25

자료: 헌법재판소

참고자료 2

2024년 주요 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2024년 9월 말,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재판활동 지원	국선대리인 보수등	소 계		127	107	84.3
		210	운영비	127	107	84.3
	재판활동 운영지원	소 계		748	578	77.3
		110	인건비	14	9	64.3
		210	운영비	219	177	80.8
		220	여비	1	-	-
		240	업무추진비	209	146	69.9
		250	직무수행경비	221	162	73.8
		430	유형자산	85	84	98.8
본부 운영지원	본부 운영지원	소 계		4,624	3,411	73.8
		110	인건비	1,351	931	68.9
		210	운영비	975	805	82.6
		220	여비	33	14	42.4
		240	업무추진비	26	22	84.6
		260	연구용역비	50	45	90.0
		320	민간이전	251	158	62.9
		420	건설비	1,823	1,328	72.8
		430	유형자산	115	108	93.9
헌법재판 연구원 운영지원	헌법재판 연구원 운영지원	소 계		1,878	1,774	94.5
		210	운영비	1,710	1,632	95.4
		220	여비	29	17	58.6
		240	업무추진비	26	13	50.0
		260	연구용역비	22	21	95.5
		310	보전금	36	36	100.0
		430	유형자산	55	55	100.0
국제교류 협력	해외연수	소 계		506	323	63.8
		210	운영비	123	49	39.8
		220	여비	383	273	71.3
	국제교류	소 계		587	408	69.5
		210	운영비	358	287	80.2
		220	여비	188	99	52.7
		240	업무추진비	37	23	62.2
		340	해외이전	4	-	-

(2024년 9월 말,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정보자료 운영	재판자료확충	소 계		470	405	86.2
		210	운영비	204	139	68.1
		430	유형자산	266	266	100.0
	헌법재판 정보화	소 계		6,443	5,651	87.7
		210	운영비	4,771	4,193	87.9
		240	업무추진비	2	1	50.0
		260	연구용역비	657	506	77.0
		430	유형자산	1,012	950	93.9
	전자도서관 운영	소 계		393	383	97.5
		110	인건비	5	3	60.0
		210	운영비	146	139	95.2
		260	연구용역비	238	238	100.0
		430	유형자산	4	3	75.0
헌법재판소 예비금	예비금	소 계		25	-	-
		710	예비비및기타	25	-	-

자료: 헌법재판소

참고자료 3

연도별 심판사건의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사건합계(A)	1,859	1,951	2,626	2,427	2,730	3,241	2,827	2,829	2,591	1,825
진행중 건수 합계(B)	-	-	-	-	6	49	144	229	336	472
결정 건수 합계(C)	1,824	1,908	2,598	2,372	2,674	3,128	2,631	2,570	2,219	1,332
취하건수 합계(D)	35	43	28	55	51	64	52	30	36	21
○ 헌가사건										
-접수 건수	37	20	35	17	31	20	38	43	25	15
-진행중 건수	-	-	-	-	-	2	3	8	12	15
-결정 건수	33	20	35	17	31	17	35	32	10	-
-취하 건수	4	-	-	-	-	1	-	3	3	-
○ 헌나사건										
-접수 건수	-	1	-	-	-	-	1	-	4	1
-진행중 건수									1	1
-결정 건수	-	1	-	-	-	-	1	-	3	-
○ 헌다사건										
-접수 건수	1	-	-	-	-	-	-	-	-	-
-결정 건수	1	-	-	-	-	-	-	-	-	-
○ 헌라사건										
-접수 건수	8	9	2	2	6	5	2	5	10	4
-진행중 건수	-	-	-	-	-	-	-	-	6	4
-결정 건수	6	7	1	2	6	5	2	5	4	-
-취하 건수	2	2	1	-	-	-	-	-	-	-
○ 헌마사건										
-접수 건수	1,325	1,379	1,987	1,819	2,062	2,472	2,201	2,322	1,935	1,283
-진행중 건수	-	-	-	-	2	28	94	147	172	298
-결정 건수	1,310	1,350	1,963	1,769	2,014	2,390	2,063	2,152	1,742	967
-취하 건수	15	29	24	50	46	54	44	23	21	18
○ 헌바사건										
-접수 건수	488	542	602	589	631	744	585	459	617	522
-진행중 건수	-	-	-	-	4	19	47	74	145	154
-결정 건수	474	530	599	584	622	716	530	381	460	365
-취하 건수	14	12	3	5	5	9	8	4	12	3

* 접수 건수(A): 당해연도 기준 접수된 사건 수

* 진행중 건수(B), 결정 건수(C) 및 취하 건수(D): 당해연도에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말 기준 진행중(B)이거나 결정(C) 또는 취하(D)된 사건 건수임